

# 漁船法制定의 背景과 漁船協會設立

水 產 廳

漁政局長 張 奉 煥

## 目 次

1. 序言
2. 漁船法의 制定
3. 漁船法施行關係法令의 制定
4. 漁船協會設立
5. 結言

### 1. 序 言

三면이 바다라는 地理的의 條件과 우리나라 水産業이 世界上位圈으로 浮上한 水産國으로서 水産業의 持續的인 發展을 爲하여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制度中에서 未備 또는 不備한 것은 強力하게 改善하여야 한다는 것은 水産行政의 課題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水産物生産手段인 漁船의 建造, 檢査, 登錄等 漁船行政의 制度改善問題는 水産廳이 發足한 以來, 水産廳關係者, 水産業界 그리고 關聯學界에서 끈기있게 擧論되어온 課題였던 것이다.

그러나 本漁船行政의 一元化를 爲한 制度의 改善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어 水産廳發足以後 10년이 經過한 時點에 이르기까지도 漁船法을 制定하지 못한채 漁民들에게는 여러모로 不便을 주고 있었다.

隣近의 日本國에서는 漁船法을 制定하여 運用된지 25年 이라는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 水産業의 生産手段인 漁船의 技術開發을 爲한 研究가 活潑히 推進되어 온 것이나, 우리나라로서는 漁船法이 制定되지 못하고 나아가서 技術開發의 土전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은 實로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漁船法은 商工部, 海運港灣廳等에 分散, 管掌하고 있는 漁船의 登錄, 檢査業務와 漁船建造承認業務를 水産廳으로 移管하여 一元化하는 것과 水産廳이 이를 받아 內務部(市, 道)에 委任하는 業務의 調整이 解決되어야 하는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漁船法의 制定이 遲遲不振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漁船漁業을 經營하는 漁業者의 不便은 勿論, 漁船의 近代化를 爲한 技術開發이 散發的으로 또는 破行的으로 發展되었으며 窮極的으로는 水産業發展의 阻害要因이 된 것이다.

### 2. 漁船法의 制定

序論에서 밝힌바와 같이 漁船法은 關係部處의 業務調整이 圓滿하게 協議되지 않고서는 現實的으로 一元化가 어려운 實情에 있었으므로 다른 法制定보다도 相當히 어려운 隘路가 뒤따랐다.

그러나 水産廳은 水産物生産手段의 基本이 되는 漁船의 需給計劃과 漁船建造, 漁業許可, 資金의 支援等 助長行政을 擔當하고 있고 海運港灣廳에서는 漁船의 登錄과 檢査業務, 商工部에서는 製造承認業務가 各各 分散管掌함으로 因하여 漁民의 不便과 隘路가 極甚하였음으로 漁民의 便益을 圖謀하고자 年例行事처럼 漁船行政一元化作業을 推進한바 있었다.

비록 實効를 견우지는 못하였지만 1970년부터 2年間 20噸未滿의 漁船登錄과 檢査業務를 交通部에서 引受토록 推進한바 있었으며 行政改革委員會의 數次에 걸친 調查研究等으로 漁船法制定의 출기찬 動機를 形成하여 왔던 것이다.

1977년에는 날로 成長하면서 世界頂上의 水産

國으로 挑戰하려는 水產業界의 強力한 與望에 副應하여 漁船法の 制定이라는 大課題로 前提로 政府의 強力한 施策方向을 設定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리고 強力하고 迅速하게 推進된 것이다.

數次に 걸친 水産廳幹部會議에서 審議가 되어 法案의 骨格을 다듬고 살을 부치어 1977. 7. 20 水産廳으로서의 漁船法試案을 마련하고 서울, 釜山地域等을 對象으로 斯界의 關係人事들을 모시고 公聽會로 開催하고 이 公聽會에서 提起된 事項을 補完, 調整함과 同時 이를 關係部處와 緊密히 協議, 1977. 10. 4 黨政協議를 마치고 同年 10月 6日 經濟長官協議會를 거쳐 國務會議(10. 24)에 上程, 通過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 法案은 政府案으로 하여 1977. 11. 9 第99回 定期國會에 提出하여 1977. 12. 15 國會의 通過를 보고 1977. 12. 31 法律第3063號로 公布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當年度下半年에 法案을 着手하여 年內에 通過할수 있었다는 것은 첫째 本法案이 行政의 一元化라는 前提下에 漁船行政의 實情으로 보아 附合을 要했다는 點과 둘째로는 언제인가는 반드시 實現하여야 할 課題였으므로 關係者모두가 使命感을 가지고 活氣찬 推進力에 힘입었던 것으로 生覺되는 것이다.

本法制定過程에서 黨政協議와 經濟長官協議會의 上程을 앞두고 當廳擔當 漁船課長의 急作스러운 有故로 因하여 年末國會通過目標에 蹉跌이 나지 않도록 施設課長으로 하여금 漁船課長兼務發수를 하여 空白없이 推進하는데 안간힘을 다했던 것은 漁船法制定過程에서 잊지 못할 回顧中の 하나인 것이다.

漁船法制定의 目的과 趣旨中の 하나인 商工部管掌의 漁船建造承認業務를 水産廳으로 移管하는 問題는 協議過程에서 商工部의 強力한 反撥에 接하므로써 當初 計劃하였던 漁船行政一元化를 100% 達成하지 못하고 漁船建造의 事前承認이라는 句節을 挿入함으로써 우선 打開策을 模索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持續的인 協議를 거쳐 補完, 또는 改善을 하여 一元化하여야 할 課題라고 生覺된다. 그러나 漁船法上 制度改善의 主要內容中에 漁船의 自律的인 共濟加入을 義務化 시키므로써 漁船을 災害로 부터 再起할 수 있

는 制度의 設定과 漁船技術開發을 明文化하여 우리나라 漁業技術의 定着化를 爲한 礎를 마련한 것이 外國의 漁船法境遇에 比하여 特色있는 것으로 指摘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漁船法の 制定과 關聯하여 漁船員의 業務를 同時에 移管하여야 하나 機構面이나 財政面에서 受任態勢를 갖추지 못함으로 因하여 이 業務를 함께 一元化 시키지 못한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課題中の 하나인 것으로 思料된다.

### 3. 漁船法施行法令의 制定

漁船法은 1977. 12. 31字로 公布되었으나 1979. 1. 1부터 이 法令을 施行하기 爲하여는 同法施行令 施行規則 關係部令等 20餘種을 制定할수 있도록 1年間의 猶豫期間을 設定한바 있으나 同關係法令의 量的인 面에서나 技術또는 行政的인 面에서 1年の 期間은 너무나도 짧은 期日이었다.

특히 施行令이 制定된 後에 施行規則, 各種部令等 先行法令이 制定되어야 後續 規程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抄案作成에서 부터 關係部處와의 協議를 거쳐 公布한다는 것이 數拾種의 規程이면서 時限性을 지니고 있으므로써 綿密한 推進計劃을 樹立하여 執行, 點檢하지 않으면 法施行에 重大한 蹉跌을 招來하게 되므로 많은 時間과 努力을 必要로 하였다.

첫째 漁船法施行令의 骨格을 만들고 다듬으면서 많은 時間을 所要한바 있으며 然後에 施行規則의 制定에 이어 施設等에 關한 規程과 漁船檢査員의 資格等에 關한 規程等의 農水産部令, 그리고 執行地告示, 漁船檢査業務代行告示等の 水産廳告示順으로 作業하는데 그 作業分量과 所要 時間이 意外에도 많이 所要되었고 또한 心血을 기울게 한 作業이었다.

回顧컨대 1977年度의 漁船法制定에 있어서는 法制定의 基本目標과 確固한 水産施策의 一環으로 專心全力을 投球한바 있으나 1978年度에 이르러 施行令과 關係部令, 告示의 龍대한 業務量을 年內에 全部 制定公布하여야 한다는 細部推進計劃書를 檢討하였을 때에 實로 責任感을 痛感하지 않을수 없었다.

主擔漁船課로서는 基本事業計劃에 依하여 推

進하여야 할 事業에다가 本法制定이라는 課題를 同時에 推進하므로 因한 過多한 業務量과 漁船技術과 檢査에 關한 能熟한 職員의 確保가 어려운 實情에 있었으므로 本業務의 推進이 至難하였던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不可避한 現實이었던 것이다.

苦心焦思 끝에 漁船協會設立準備委員會를 發足시켜 이 委員會에 實務要員을 두어 協會設立準備와 關係規程을 並行하여 作業하도록 한 것이다. 沿近海漁業育成資金 32百萬원을 水協에서 借入, 漁船協會設立과 關係規程作業에 所要되는 經費를 充當하도록 함과 同時, 實務作業要員으로서는 漁船法案을 起草한 現漁船協會技術理事崔洛卿을 主軸으로 廳, 水産振興院, 海運港灣廳等의 關係官으로 하여금 實務要員으로 委囑하여 本格的인 作業에 着手케 하므로서 急進적으로 推進된 것이다. 여기서는 特記할 事項은 漁船의 安全, 設備에 關한 規程을 檢討한나 木船構造規程을 비롯하여 鋼船, FRP, Cement等의 構造規程, 機關規程, 漁船特殊規程, 救命, 消防等 設備規程, 復原性, 滿載吃水線等 規程이 個別規程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를 「漁船設備等에 關한 規程」으로 統合하도록 한 것이다. 第1編總論, 第2編 船體構造, 第3編 機關, 第4編 復原性, 第6編 滿載吃水線으로 統合하여 總1008條의 尠大한 條項의 規程이 되어 1,111條의 民法에 다음가는 우리나라 法律史上 最多條項의 規定이 制定된 것이다.

#### 4. 漁船協會의 設立

漁船協會設立準備委員會는 周鴻章次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6名의 委員(孫井植 企劃管理官, 金應守漁政局長, 崔益星生産局長, 筆者, 趙永濟水協中央會副會長, 朴相勳韓國船級協會理事)으로 構成하고 前述한 바와 같이 32百萬원의 豫算과 6名의 實務作業要員으로 하여금 設立準備作業을 着手케 하므로서 協會 誕生의 기틀을 잡은 것이다. 本作業의 內容은 漁船協會의 定款草案으로부터 機構案, 79年度事業計劃 및 豫算案, 人事管理規程等 10餘種의 規程案作成, 檢査員, 行政員의 選拔教育, 本部 및 各支部出張所의 事務室確

保, 諸證書, 書式의 油印, 計器需給, 海運港灣廳으로 부터의 漁船檢査業務의 引受作業等이 主된 것이었다. 새로운 特殊法人體를 全國單位로 設立한다는 것은 充分한 準備期間이 있어야 하나 本設立準備委員의 構成이 漁船法施行令에 根據를 두고 있으므로 同施行令이 公布된 78年11. 6.까지 準備作業을 미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時間이 촉박하므로 不得已 施行令公布以前 2個月前부터 事實上的 作業에 着手토록 하였다.

특히 前述한 바와같이 本實務作業要員은 漁船法의 후속 規程制定作業을 兼하여야 함으로 因하여 4個月동안에 全作業量을 消化한다는 것은 너무도 甚한 分量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甚한 分量의 業務量이지만은 水産廳開廳以來 우리 水産人의 宿願事業인 漁船行政一元化의 制度와 이를 運用하는 市, 道, 漁船協會의 組織과 體制에 있어 秋毫도 損失이 없어야 하겠기에 綿密하고 徹底한 準備作業이 되도록 腐心하고 努力하였다.

여기에 導入된 PERT SYSTEM에 依한 作業計劃書의 作成은 많은 作業量을 한눈으로 볼수 있고 推進狀況을 容易하게 點檢하며 最大限으로 時間을 活用할수 있게 하였으며 年內에 作業을 完了하는데 決定的인 要因이 되지 않았나 하고 回顧하여 본다.

이 作業過程에서 考慮하여야 할 事項으로서는 첫째 一線에서 檢査業務를 直接擔當하여야 할 檢査員은 技術적으로 優秀하고 庶政刷新의 次元에서 公正하게 業務를 處理하여야 한다는 것은 協會의 存立에 關한 事項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優秀한 技術人력을 確保하고 不正을 하지 않도록 하기 爲하여는 干先 適應한 給與를 주어야 하는데 政府의 漁船協會에 對한 支援計劃上으로 보던 月 15萬원에 技術手當 3萬원 計 18萬원 밖에 計上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最少限으로 引上調整 할 수 있도록 數次에 걸친 準備委員會의 熟議를 거쳐 同一한 機能의 船級協會賃金水準의 60%線(月 24萬원)으로 調整하게 되었다. 漁船協會의 豫算中 70%線이 人件費로 構成되어 있었으므로 引上調整은 基本的으로 貧弱한 漁船協會豫算의 編成을 超緊縮으로 編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因하여 監事의 非常勤, 理事의 部長兼

職, 本部課長의 兩課兼務等 一人二役의 業務를 賦與케 함과 同時 全國 11個支部, 出張所의 事務室을 市, 郡 水協의 事務室을 無料로 提供케 하고 本部事務室은 江南區에 最少坪數를 確保토록 하여 出帆토록 한 것이다.

둘째는 檢査員의 教育에 있어서는 第1次로 需給되는 檢査員이야말로 漁船協會의 主된 基幹要員이 될 것이므로 技術教育도 重要하지마는 漁船協會를 育成發展시켜야 할 使命感을 불어넣어 주는 精神教育도 매우 重要하다고 判斷, 水産技術訓練所와 協議, 2週間 새마을 教育方式으로 實施하도록 하고 教育期間中에는 筆者는 勿論 當時 申泰榮廳長으로 하여금 直接 特講까지 하도록 하여 처음으로 發足하는 協會의 檢査員教育에 特別히 神經을 쓴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老대한 作業量을 4個月이라는 期間동안에 晝夜를 가리지 않고 東奔西走하면서 큰 問題點 없이 責任을 完遂하여 年末까지 完了하였던 6名의 實務要員에게 지금도 感謝한 마음 禁할길 없다. 每日作業實績을 確認, 點檢 할때마다 無理한 作業日程計劃을 크게 蹉跌없이 推進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努力의 所産이라고 生覺하며 實務要員의 業績에 對하여 다시한번 致賀의 뜻을 늦게나마 傳하고자 한다.

年末에 이르러서는 事務室賃貸契約과 칸막이 工事, 全國支部出張所에의 冊, 결상등의 汁器購買, 發送, 數拾種의 書式, 證書의 印刷配付, 行政員의 需給, 教育, 海運港灣廳에서의 業務引受, 開所 및 懸板式準備等を 끝내고 78.12.31 밤 10時에 本部事務室의 電話를 開通하였다는 報告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漁船協會의 設立準備

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로서 準備完了의 安堵感을 갖고 大過없이 現金麒英 會長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引繼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結 言

79.1.1. 漁船法이 施行되고 同年 1.4.에 漁船協會의 開所 및 懸板式을 가졌다. 1年 7個月이라는 歲月을 所要하면서 이 法을 施行하게 하고 協會의 設立을 하게 한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漁船行政, 技術開發의 劃期的인 基盤을 構築하는데 크게 寄與 하리라고 確信을 한다.

어떠한 法이든 새로이 法을 하나 制定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란 것을 實感케 하였으며 또한 完璧한 法의 制定이라는 것은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法의 運用과 早速한 定着化를 爲하여 關係官은 使命感을 갖고 漁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나아가서는 技術開發을 爲하여 最善의 運用者가 되어주기를 期待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이 法의 施行과 漁船協會의 設立은 水産行政이 發展할수록 持續적으로 發展될 것이며 未備된 部分은 漸次的으로 補完하면서 漁民을 爲한 法이 되도록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完璧하지는 못하지만은 누군가가 이 法을 만들어야 한다는 水産業界의 與望을, 그리고 누군가에 依하여 漁船協會를 끌고 漁船의 檢査, 技術開發을 하여야 하는 歷史的인 課題를 하나 解決하였다는 것은 水産行政業績中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보다 빛내기 爲하여는 漁船協會의 發展이 前提가 되어야 하므로 漁船協會의 無窮한 發展을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이다.